

개정 전	개정 후
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	
한다.	
가. · 나. (생략)	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	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
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	일부개정법률 부칙
제11조(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	감면에 관한 경과조치) ① -----
감면에 관한 경과조치) ① 2	-----
023년 1월 1일 전에 「도시	-----
개발법」 제29조에 따른 환	-----
지계획 인가 또는 「도시 및	-----
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	-----
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	-----
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	-----
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	-----
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	-----
의 소유자가 2023년 1월 1일	-----
이후 취득(토지상환채권으로	-----
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	-----
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	-----
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	-----
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	-----
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	-----
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한	-----
다. 이 경우 종전의 제74조제	-----
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	-----
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은 “2	-----
028년 12월 31일	-----
	-----.